# 배곧새봄유치원규칙

제정 2020. 6. 3.

# 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배곧새봄유치원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원은 배곧새봄유치원이라 명한다.

제3조(위치) 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-15에 위치한다.

# 제2 장 교육연한, 학기, 및 휴업일

**제4조(교육연한 및 학년도)**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고,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5조(학기)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, 제 2학기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6조(휴업일)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- 1. 관공서의 공휴일
- 2. 하계 동계 학년말 방학
- 3. 주 5일 수업에 따른 토요휴업일
- 4. 개원기념일
- 5. 원장 재량휴업일
- 6. 기타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
- ② 제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유치원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- ③ 제 1항 2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,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. 유치원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.
- ④ 휴업일지라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.

#### 제 3장 학급편제 및 정원

제7조(학급편제) ① 우리 원의 학급편성은 인가 학급 수내에서 편제 한다.

1. 교육과정은 만3세반 5학급, 만4세반 5학급, 만 5세반 5학급, 특수학급 1학급,

- 총 16학급으로 한다.
- 2. 방과후과정은 만3세반 2학급, 만4세반 2학급, 만5세반 2학급, 총 6학급으로 한다.
- ②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은 교육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.
- 제8조(유아정원) ①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제 16조에 의거, 우리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유아 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.
  - ② 방과후과정 유아 정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.

#### 제 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제9조(교육과정 및 교육내용) ①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지침에 따라 유치원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, 적용한다. ② 방과후과정은 경기도 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유아의 신체,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
# 제 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

- 제10조(수업일수) ① 우리 원의 수업일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  - 1.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으로 한다.
  - 2.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, 연구 유치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  - 3.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,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'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업시간) ①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4~5시간으로 편성한다. 단, 방과후과정은 교육과 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.
  - ② 수업의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수업운영방법) ① 수업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한다.
  -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유치원과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연령의 학급과 혼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  - ③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-학습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  - ④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3조(방과후과정 운영)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, 당해연도 경기도 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
#### 제 6장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, 휴학, 수료 및 졸업

제14조(입학) ① 입학시기는 3월로 하며,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

가능하다.

- ②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 의거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.
- ③ 본원에 입학하려는 유아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유아를 선발한다.
- ④ 입학전형은 당해 학년도 유아모집 규정에 의한다.
- 제15조(재입학, 편입학, 전학) ① 우리 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, 전학하려는 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14조 ④항에 의거,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 만 3,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재입학을 우선 허가한다.
- 제16조(휴학) 질병이나 사고, 기타 원인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수업을 받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는다.
- 제17조(퇴학) 질병 등의 기타 가정 사유로 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퇴학원서를 받아 처리한다.
  - ① 유아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
  - 2. 수업료 징수결정 후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할 때
  - 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유아

제18조(수료 및 졸업) 유치원장은 유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, 졸업 인정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## 제 7장 수업료, 입학금 및 기타비용 징수

- 제19조(입학금 및 수업료) ①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. 단, 지원제외 대상자의 경우 수업 료를 납부해야 한다.
  - ②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- ③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다.
- 제20조(기타 비용징수) ① 본원의 기타비용(수익자부담경비)은 간식비, 급식비, 방과후운영비, 체험학습비, 특성화활동비,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수익자부담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,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- ③ 수익자부담비는 미리 고지하고, 징수하며, 사업종료 후에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- 제21조(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) 교육활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시기는 원 장이 정하고 회계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다.

#### 제 8장 유치원운영위원회

제22조(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) 본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 제23조(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)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

행령,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# 제 9장 규칙 개정 절차

제24조(규칙개정절차)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·시행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행규칙)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. 제3조(기타사항)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